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0. 12



진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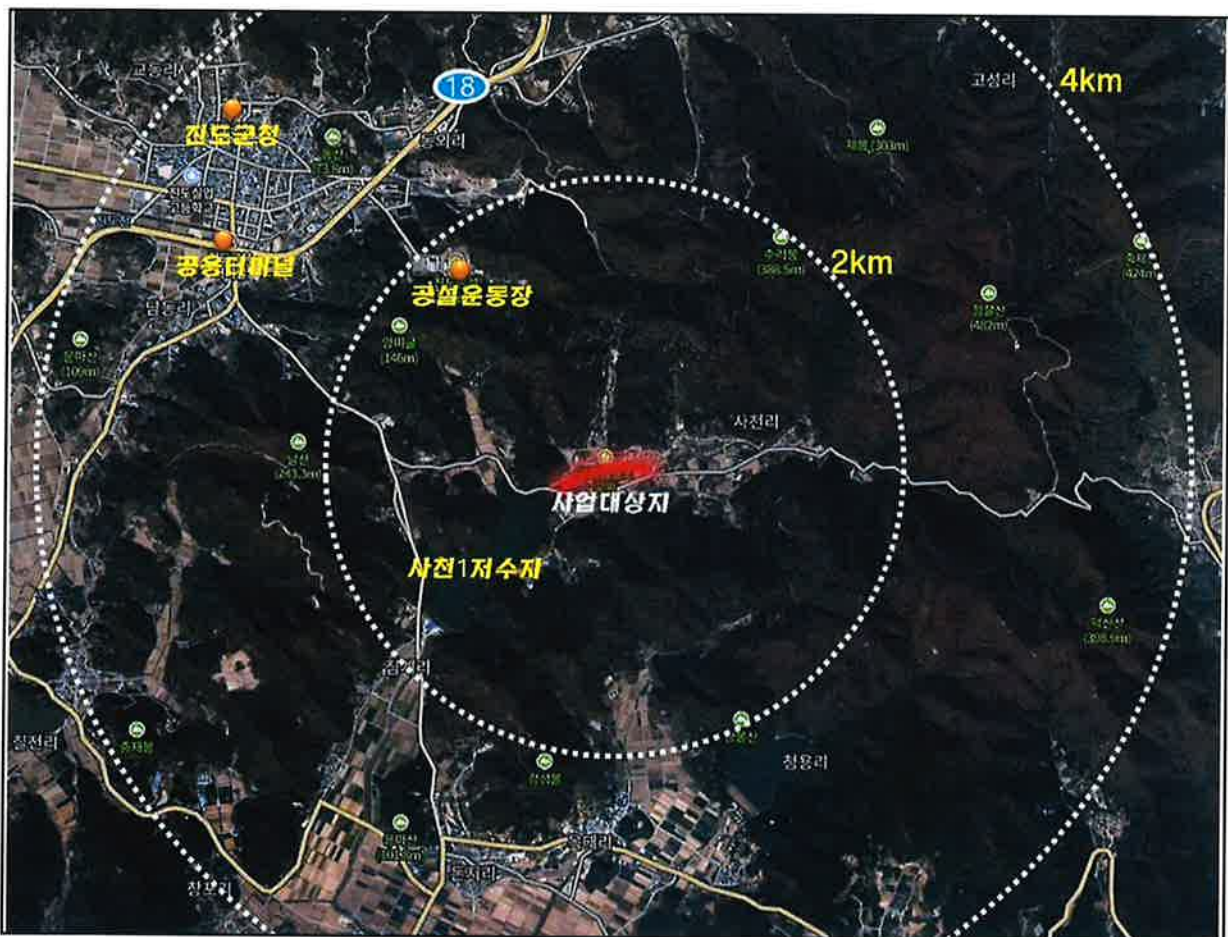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7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9
1.4 사업의 내용	9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13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3
2.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13
2.3 평가항목·범위 방법의 설정	16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3
3.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3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삼별초공원이 기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하천의 미정비구간 및 정비구간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제방관리용 도로개설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코자 함.
- 또한, 윤림삼별초 공원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이에 따른 지역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그림 1-1> 사업구간 광역위치도



사업구간 서측 상공 조망(시점)



사업구간 남서측 상공 조망

<사진 1-1> 사업구간 현황 사진(1)



사업구간 남측 상공 조망



사업구간 동측 상공 조망(중점)

<사진 1-2> 사업구간 현황 사진(2)

1.2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1>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3.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p> <p>2.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p> <p>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p> <p>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p>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2]와 같다.</p>

<표 1.2.1-2>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 및 22조제2항 관련)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개발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제2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1.2.3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공개하는 바임.

<표 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p>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p> <p>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0. 09. 28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 및 용역 착수
- 2020. 11. : 현황 및 환경질(수질, 대기질 등) 측정조사
- 2020. 12.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1.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의견수렴(예정)
- 2021. 02. : 전략(본안)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전라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예정)
- 2021. 03.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예정)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명

-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

1.4.2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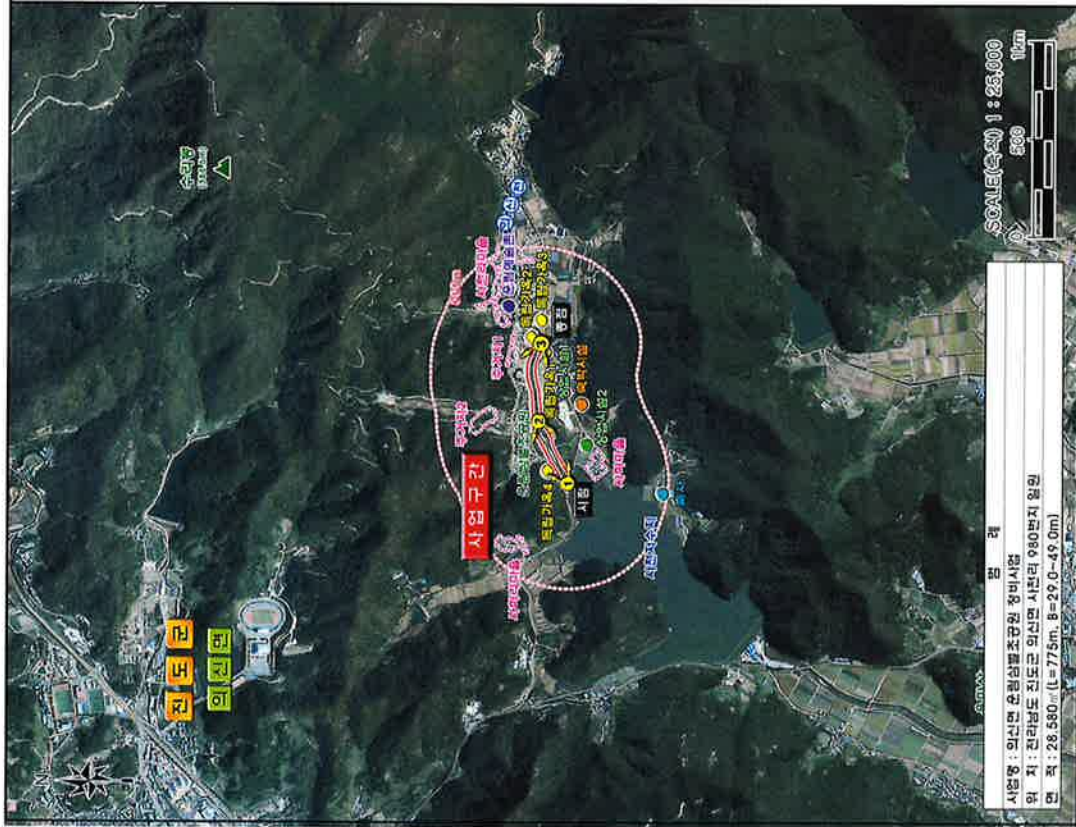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980번지 일원
 - 면 적 : 28,580m²(L=775m, B= 29.0~49.0m)
- 시간적 범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1.4.3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사업시행자 : 진도군
- 승인권자 : 전라남도

1.4.4 사업비

- 4,000백만원



조망점 1 : 사업구간 시점부(No. 0)에서 동점부방향 조망



조망점 2 : 사업구간 동점부(No. 9)에서 시점부방향 조망



조망점 3 : 사업구간 동점부(No. 19+15)에서 시점부방향 조망

<그림 1-4> 사업구간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업 특성, 입지여건,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별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예측하고자 설정함.

2.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의 특징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범위와 예측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
- 따라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요인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함.

2.2.1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980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2.2.2 환경영향평가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중 중점평가지역은 사업지구로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 광역평가지역은 진도군, 의신면, 주변 정온시설 등으로 설정하여 검토함.

<표 2.2.2-1>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범위

검토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설정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대상지 및 대상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 계획시행시 식생변화 및 육상·육상동물 서식환경 변화 예상지역
		자연환경자산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지형변화 예상지역
	주변자연경 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대상지가 조망되는 지점	· 계획시행시 시설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계획대상지 및 주변 수계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리·수문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강우분석에 따른 홍수위, 홍수량 변화 분석
생활환경의안 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계획대상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 토공사 및 연료사용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예상 지역
		소음·진동	· 계획대상지 주변지역	· 공사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 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예상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사회·경 제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대상지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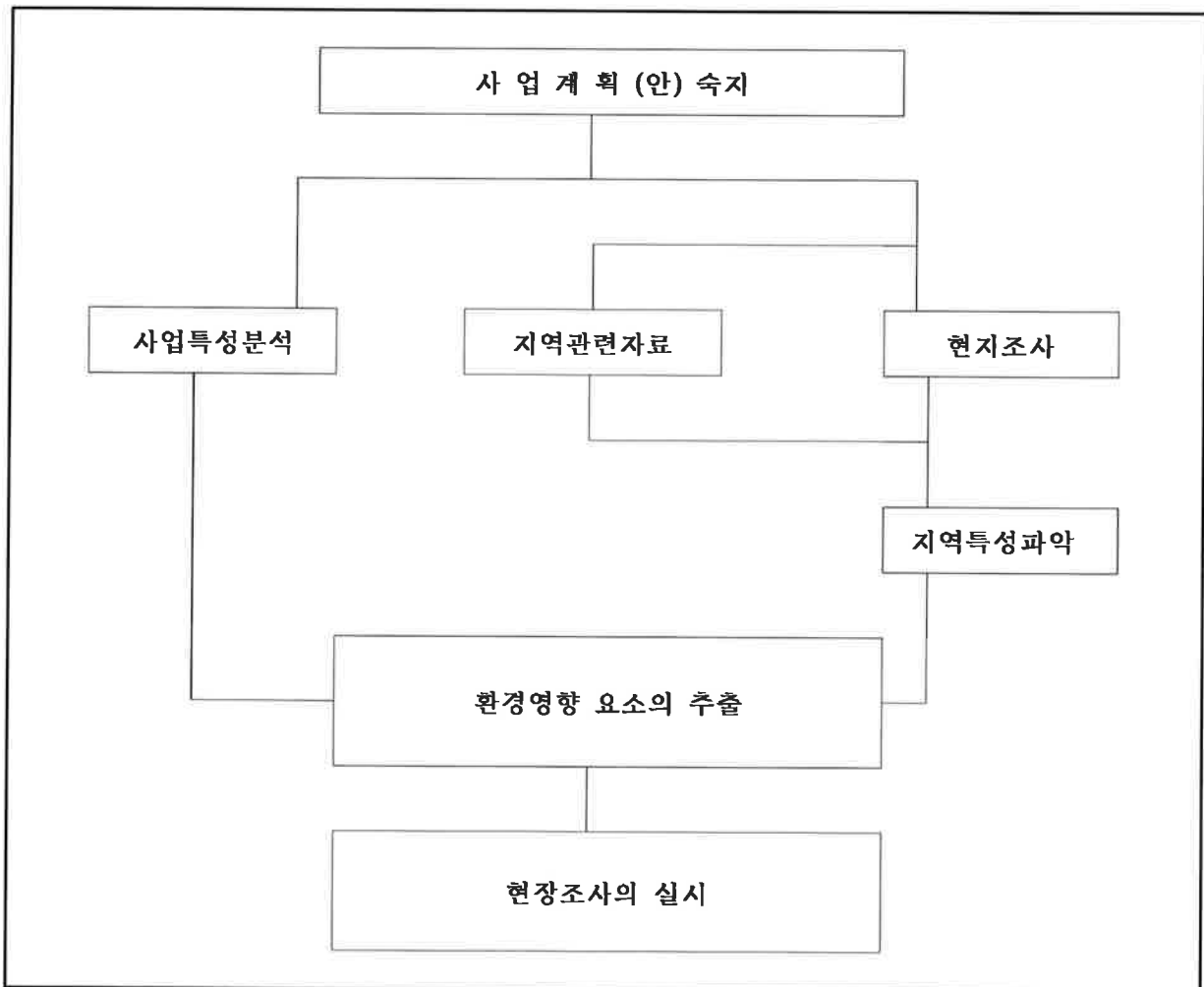


<그림 2.2.2-1> 대상지역 설정도

2.3 평가항목 범위·방법의 설정

2.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그에 따라 본 사업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주된 요인을 감안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에 의거하여 계획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2.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모식도

<표 2.3.1-2>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종	환경영향요소	비고
공사단계	동·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 변화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서식환경 교란	
	토지이용변화	·경관변화	
	지형의변화	·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형의변화	
	장비가동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발생	
공사인부의 활동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		
경관변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운영단계	·차량이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교통소음 증가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2.3.2 평가항목의 선정기준

- 본 계획의 종류 및 성격, 입지여건,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검토된 환경영향요소 추출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요인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60조」,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2011.12.2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18-205호)에 의거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함.

<표 2.3.2-1> 평가항목 선정기준

구분	영향의 중요도	범위 선정 원칙(기준)
평가항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경우 ·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현황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나 사업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 유사사례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증명된 경우 · 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추가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현황조사로 대체하고, 상세조사 및 예측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하며 사업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보호지역, 보호대상 등 법령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 유사사업에서 보완사례가 많은 항목 ·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경우 · 전문가의 의견이 예상되는 경우 · 분쟁이 소지가 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 예측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상세하게 조사한다. ·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 보완을 줄이기 위하여 상세히 고려해야한다.

자)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2011.12.28., 환경부

2.3.3 평가항목 · 범위 설정 및 사유

가. 주요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의 특성과 부합하도록 대기,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자원 순환, 소음·진동, 토지이용, 경관 총 9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함

<표 2.3.3-1> 평가항목의 설정 및 사유

세부평가항목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의 서식지 영향발생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하천공사로 인한 하상구조 변화 검토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공사 및 조경 등의 경관의 변화가 예상됨
(4)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수계의 영향발생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 소음진동 등)		· 공사시 장비 및 토공작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 및 검토 · 공사시 및 운영시 장비운영 및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진도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을 고려한 처리가능 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영향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발생

나. 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항목

- 주요 평가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영향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현황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제외함.

<표 2.3.3-2> 현황조사항목과 제외항목

항목			설정 사유	검토사항
현황 조사 항목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나 수질과 대기질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진도기상대의 10년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상항목별로 분석, 경향을 파악
제외 항목	온실가스		○ 온실가스 영향 및 변화 없음	-
	위락		○ 위락 영향 및 변화 없음	-
	악취		○ 악취 영향 및 변화 없음	-
	산업		○ 산업 영향 및 변화 없음	-
	전과·일조장해		○ 전과·일조장해 영향 및 변화 없음	-
	인구·주거		○ 인구·주거 영향 및 변화 없음	-
	위생·공중보건		○ 위생·공중보건 영향 및 변화 없음	-

2.3.4 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

- 본 개발계획에 따른 전철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내용과 평가방법을 결정함.

<표 2.3.4-1> 항목별 검토내용 및 방법(안)

항목	구분		검토내용	평가방법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 물상	· 생태자연도를 통한 주요 식생 및 동물서식 여부 및 저감방안 수립	· 생태자연도 및 기존 조사자료를 통한 변화여부분석 ·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계획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지형· 지질	·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 하상구조 변화 검토	· 진도군 일대 산경도 및 지형도 분석 · 도면을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지 형분석
	자연경관에 미치는영향	경관	·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변화	·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 화 분석 및 저감대책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 토사유출로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 향검토 · 사업계획대상지 주변 기상자료에 의한 강우분석 · 토지이용변화에 의한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증가에 따른 하류수계 영 향예측	· 현황 조사 실시 · 토사 및 우수증가에 따른 저감 방안 제시
	수리· 수문	· 진도군 인근 강우자료 분석 · 홍수위 및 홍수량 변화 분석을 통한 수리수문 검토	·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연계성 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수리수문변화 검토	

<표 2.3.4-1> 계 속

항목	구분		검토내용	평가방법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대기질 영향검토시 기초자료이용	·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 최신 기상연보자료 활용
		대기질	· 주변 지역 대기질 현황 파악 · 개발로 인한 대기질 영향검토	· 대기질 측정망 활용 · 비산먼지 억제대책 강구
		소음·진동	· 인근 정온시설의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점음원의 거리감쇠 이론을 적용한 소음발생정도 분석 및 저감 대책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진도군 및 인근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화의 효율성	친환경 적자원 순환	· 생활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 ·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 예측 및 처리방안	· 진도군 최신통계연보를 활용 · 생활폐기물 발생량산정 ·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산정
사회·경제 환경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 토지이용변화검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조사내용 : 생태계현황 ·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500m · 조사방법 - 기존 및 최근 문헌자료 분석 -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 최근 문헌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태계 현황파악 및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보전	지형·지질	·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등 ·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고	· 하상구조 및 지형의 변화, 토지 및 사면의 안정성 등을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기치가 높은 지역 ·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 조망권 분석 검토(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검토)
	수환경의보전	수질	· 조사내용 - 계획대상지 하천 수질현황 ·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하천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 수질 현황 측정 및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량예측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및 처리

<표 2.3.4-1> 계속

항목		구분	영향예측 방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 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진도기상대 · 조사방법 : 문헌자료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상자료 조사 및 현황 파악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경계로부터 영향예측지점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현황검토 · 공사시 대기오염검토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소음발생원 현황 및 소음·진동도 ·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주변 500m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장비투입에 의한 거리 감쇠식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 현황 ·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상지 및 진도군 내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 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진도군 내 · 조사방법: 문헌자료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단위에 의한 폐기물량예측 및 지자체 연계처리계획 검토
	사회·경제환경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편입예상지역 · 조사방법 : 기존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3.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진도군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를 공개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본 사업계획 관련 주요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람기간동안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공람장소는 진도군과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표 5.1-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청 홈페이지 (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국토 계획에 이용에관한 법률 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공고·공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기간 : 14일 (공휴일 제외) - 신문공고 : 중앙 및 지방일간 각 1회 이상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14일간) ○ 관계기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기관의 장 - 협의기관의 장 - 유역·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 -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60일 이내 의견 통보

<표 5.1-1>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 ○ 공청회 개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토록 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청 홈페이지 (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이상